

# 정관

## 동부건설주식회사

제정 1969. 1. 24.

개정 1971. 9. 25. 1972. 5. 24. 1973. 4. 22. 1975. 12. 20. 1976. 2. 23. 1976. 5. 20.  
1976. 11. 19. 1977. 12. 27. 1978. 8. 18. 1979. 2. 26. 1980. 2. 27. 1981. 2. 26.  
1982. 2. 25. 1984. 2. 24. 1985. 2. 27. 1986. 2. 27. 1987. 2. 27. 1988. 2. 27.  
1989. 2. 25. 1989. 6. 26. 1990. 2. 26. 1992. 2. 26. 1994. 2. 25. 1996. 2. 27.  
1996. 10. 29. 1997. 2. 27. 1998. 3. 20. 1999. 3. 19. 1999. 12. 24. 2000. 3. 24.  
2001. 3. 23. 2002. 3. 29. 2006. 3. 17. 2007. 3. 27. 2008. 3. 14. 2009. 3. 20.  
2010. 3. 30. 2011. 3. 18. 2012. 3. 23. 2013. 3. 22. 2014. 3. 28. 2015. 7. 20.  
2016. 10. 18. 2017. 3. 24. 2018. 3. 23. 2019. 3. 20. 2022. 3. 23.

##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회사는 동부건설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ONGBU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 내지 사업과 관련된 기획, 타당성 조사, 사업관리, 설계, 엔지니어링구매, 시공, 감리, 검사, 시운전, 판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 일체의 종합건설용역사업과 관련기자재, 중기, 용역, 부산물 등의 제조, 가공, 설치, 임대 및 판매업
  -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와 이에 부대되는 전기통신, 기계설비, 소방설비, 실내의장 시설 등
  - 조경, 도로포장, 철강재, 항만준설, 전기, 통신, 정보통신, 준설, 삭도 등 특수시설
  - 전기, 열, 가스, 유류,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제조, 배급시설 및 공급
  - 상하수도, 정수, 오·폐수처리, 분뇨처리, 액상폐기물 정화조 및 기타 수처리, 산업 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기타 수질대기,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 시설물 해체 및 구조개선용역
  -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교통영향평가 및 측정계측, 시설물 안전진단, 지적측량 및 지도촬영제작 등 건설관련 전문용역
  - 종합감리전문업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부동산 및 시설 내지 사업과 관련되는 기획, 조사, 시공, 판매, 임대, 컨설팅, 중개 및 사후관리, 운영업
  - 주택, 상가, 시장,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 기타 업무시설
  -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관광, 오락, 레저시설
  - 음식점, 식음료판매시설

- 골프장, 기타 체육시설과 동 부대시설
  - 관람장, 기타 문화시설
  - 도로, 항만, 주차장, 철도, 운하, 공장 및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
  - 부동산개발업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품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정비, 수리, 관련서비스업 및 수출입업
- 정보통신기계·기구
  - 생명공학제품
  - 반도체제품
  - 화학제품
  - 금속제품
  - 섬유제품
  - 피혁제품
  - 자동차제품
  - 잡화제품
  - 조립금속제품과 기계 및 장비
  - 석산개발, 골재, 양회 및 콘크리트제품
  - 철강재 및 철근가공제품
4.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품 및 용역의 제조 제공, 판매, 정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식품제조 및 식품, 토산품판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유통 및 도소매업
  - 관광사업(관광자원개발, 여행알선업, 관광객 이용 시설사업)
  - 포장 및 창고 보관사업
  - 자동차 및 중기 정비사업
  - 중기대여업
  - 석유판매업
  - 선박대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5. 광물의 조사, 개발, 채광 및 판매업
6. 종합유희업 및 종묘업
7. 부가통신업
8. 전자상거래업, 정보서비스업 및 알선 중개업
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
10. 인터넷 관련업, 방송, 영상 및 광고업
1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전문건설 공사업
- 토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령·그라우팅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시설물 유지관리업
1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정화업
- 토양정화업
  - 지하수정화업
13. 신재생에너지사업
14. 환경관리대행업
15. 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본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각지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bcon.dongbu.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회사의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본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이 경우 제1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제7조의 1 내지 제7조의 4에서 정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이천오백만주로 하되, 의결권 배제, 제한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본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 본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우선주식은 배당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제②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의결권 배제주식 및 의결권 제한주식) ① 본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상기 1항, 2항의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4(상환주식) ① 본회사는 제7조의 1 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상기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본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
- ⑤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상환주식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하는 배당 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의 5(전환주식) ① 본회사는 상기 제7조의 1 내지 제7조의 3에 의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기타 전환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회사는 설립시에 이만오천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본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9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결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부여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정년·임기만료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정년·임기만료·임원승진 또는 관계사 전배로 인한 퇴임 퇴직은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임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

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7조의 1 내지 제7조의 4에서 정한 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전환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7조의 1 내지 제7조의 4에서 정한 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7조 제1항의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본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회사는 매 결산종료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두고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은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사록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회사에 보존한다.

## 제 4 장 이사·이사회

제25조(이사 및 선임방법) ① 본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결의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후보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제2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진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선임시 임기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대표이사 및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에 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회사에 보존한다.

제29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의 보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① 본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ESG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고문) 본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감사

제35조(감사의 선임 및 보수 등) ① 본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

다.

- ⑥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⑦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⑧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36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본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6 장 계 산

제38조(사업년도) 본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본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액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말의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회사의 소득으로 하며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세칙내규) 본회사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사항) 본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3조(발기인) 본회사 설립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본정관 말미기재와 같다.

상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하기에 기명날인한다.

1969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8-8

삼척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종 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7-253

김 남 용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16-1

김 준 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7-15

홍 종 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산39번지

최 형 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7-15  
최 성 희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용정리  
김 형 진

부 칙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년 10월 29일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5의 신설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7조의 1,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7조의 4, 제11조 3항,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1,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39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일 당시의 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생법원이 정한 감사의 임기만료일인 2017년 7월 10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1항의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